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4. 16(금) 10:00

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경제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7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4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4. 5.

2. 제안이유

폐기물 감량 및 적정 처리를 통한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구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, 구민참여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별표상의 세부 규정들을 관계법령 및 사업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민참여 및 지원 근거 규정 신설(안 제4조의3)
- 나. 환경부훈령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별표 1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의 개정에 따라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병 등을 분리배출 품목에 추가하고 배출요령을 위 지침에 맞게 개정(안 별표 1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)
- 다. 수집·운반 시 과도하게 무거운 100리터 종량제 봉투 규격 및 가격을 삭제함(안 별표 2 종량제봉투 가격)
- 라.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배출 시 적정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 수수료 부과근거 마련(안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)
- 마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별표의 띄어쓰기 표현 등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
- 다. 협의기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생활환경의 청결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 안 제4조의3 주민참여 및 지원 근거 규정 신설
→ 주민의 참여를 통한 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처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.
- 2) 안 별표 1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
→ 환경부훈령의 분리배출요령의 개정에 따라 PET병 등을 분리배출 품목에 추가하고 배출요령을 환경부 지침에 맞게 개정
- 3) 안 별표 2 종량제봉투 가격
→ 수집·운반 시 과도하게 무거운 100리터 종량제 봉투 규격 및 가격을 삭제함
- 4) 안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
→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배출 시 적정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 부과근거 마련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감량 및 적정 처리를 통한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참여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세부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폐기물 관리법

[시행 2020. 12. 4.] [법률 제16699호, 2019. 12. 3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, 2010. 7. 23., 2013. 7. 16.>

②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고,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>

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·개발·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며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, 2013. 7. 16.>